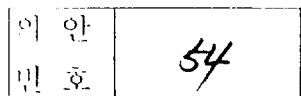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'99. 10. 22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개정이유

주택개량대상자의 연대보증인 자격을 협행 같은읍면 거주 2인에서 거주제한(동일읍·면) 규정을 삭제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넓혀주고,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코자 함

2. 개정근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

3. 주요골자

○조례 제8조(자금의 신청)에서 연대보증인의 같은 읍면 거주조건을 삭제함.

○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같은 읍면에 거주하는자 2인 이상이”를 “2인 이상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[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]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자금의 신청)①(생략) ②제1항의 신청서는 <u>같은 읍·면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【별지 제2호 서식】</u>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자금의 신청)①(현 행과 같음) ②제1항의 신청서는 <u>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【별지 제2호 서식】</u>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